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제처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4급 또는 5급 1명)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법제처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3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4. ~ 3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1명(5급 1명)”을 “1명(5급 1명)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38”을 “24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7”을 “239”로 하며,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22”를 “23”으로, 행정사무관 “84”를 “85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38”을 “24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7”을 “239”로 하며,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23”을 “24”로, 행정사무관 “83”을 “8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<u>1명(5급 1명)</u> 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제11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 <u>1명(5급 1명)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</u> -----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8</u>	<u>240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37</u>	<u>239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<u>22</u>	<u>23</u>	+1
행정사무관	<u>84</u>	<u>85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2]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8</u>	<u>240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37</u>	<u>239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<u>23</u>	<u>24</u>	+1
행정사무관	<u>83</u>	<u>84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